

##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대비표

2017.07.03

1. 주요변경 내용

- 신탁 외화계정 신설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에서 통화 삭제
  - > 신탁 외화계정 신설로 다양한 통화로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가능해 짐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에서 한국원화 표시 삭제

2. 시행일: 2017.07.03

3. 변경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1조(신탁의 목적)	제1조(신탁의 목적) (현행과 동일)	
제2조(신탁금액)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_____원으로 한다.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추가신탁 할 수 있다. 이 때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추가신탁을 하는 경우 이 신탁 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.	제2조(신탁금액)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_____으로 한다.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추가신탁 할 수 있다. 이 때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추가신탁을 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.	한국원화 표시 삭제
제3조(신탁기간) ~ [별표2]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제3조(신탁기간) ~ [별표2]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(현행과 동일)	